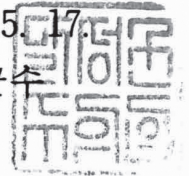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5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1. 5. 17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으로 지역체육진흥협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 및 부의장 직책 변경과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함.
(안 제5조)
- 나.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.(안 제6조제1항)
- 다.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함.(안 제6조제3항)
- 라. 정기회를 연 1회로 개최하도록 개정 및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 제8조)
- 마. 간사, 서기 직책을 변경함.(안 제9조제2항)
- 바. 기타 조례 문구를 변경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1. 4. 15. ~ 5. 6.)결과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구성)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와 달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달성군체육회장이 된다.

③ 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 : 달성군체육회장, 체육업무 담당국장,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업무 담당팀장

2. 위촉직 :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받는 사람, 그 밖에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의 임기)” 를 “(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

취소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제1항 중 “회무” 를 “협의회의 사무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분기별료” 를 “연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문화체육과장” 을 “체육업무 담당과장” 으로 하고, “의장이 지명” 을 “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5조(구성) ① <u>협의회는 의장,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 관련 전문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| <p>제5조(구성) ① <u>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와 달성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</u></p> <p>② <u>-----군수----- 달성군체육회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의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1. <u>당연직 : 달성군체육회장, 체육업무 담당국장,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업무 담당팀장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2. <u>위촉직 :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받는 사람, 그 밖에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|
| <p>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</u></p> | <p>제6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) ① <u>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</u></p> |

| | |
|---|--|
| <p><u>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<u>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<u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<u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 |
| <p>제7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제7조(의장의 직무) ① -----<u>협의회의 사무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연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</u></p> |

| | |
|--|---|
| <p>제9조(간사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문화체육과장</u>이 되며, 서기는 <u>의장</u>이 지명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| <p><u>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 <u>체육업무 담당과장</u>----, --- <u>체육업무 담당팀장</u>으로 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-|

□ **국민체육진흥법**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 [시행일 : 2021. 6. 9.] 제5조